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案)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입주자모집공고(안)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는 경우(당 견본주택 입구에 설치된 열 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 기준)
 - 손 소독제, 마스크 착용, 비닐장갑 착용과 비접촉 체온계 등 감염확산 예방조치에 불응할 경우
 - 견본주택 관람 중 마스크 및 비닐장갑 미착용 등 견본주택 안내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심사,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2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3.)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울산광역시)으로 전입 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경쟁이 없는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가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의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신청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반영, 2020.03.16 공고분부터 적용) 특별공급은 무주택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 합니다.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가정제 제한사항 : 가정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정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정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정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정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

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는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경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경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인터넷 홈페이지(<http://autovalley-hyangleeps.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1590호(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요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체결합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등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가정제 당첨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하여도 「공인중개사법」 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에 따라 「주택법」 제65조 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

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심사	계약체결
일정	2020.08.04.(화)	2020.08.05.(수)	2020.08.06.(목)	2020.08.12(수)	2020.08.13(목) ~ 2020.08.22(토)	2020.08.24(월) ~ 2020.08.26(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특별, 일반공급 청약신청 자격 서류 지참, 건본주택 내방 및 제출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건본주택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건본주택(북구 진정동 897-2) ※ 구비서류 등 지참하여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본주택 ※ 당첨자 외 입장 불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제출 및 심사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37019호(2020.07.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76번지

■ 대지면적 : 15,101.4000㎡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건축연면적 : 44,579.4901㎡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2층 5개동, 총 376세대 중 일반분양 149세대 [특별공급 61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9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4세대)] 및 부내복지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합계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 주택	2020000889	01	059.7601	59A	59.7601	23.4735	83.2336	32.9295	116.1631	42.8895	30	3	3	6	1	17	1
		02	059.9224	59B	59.9224	23.7069	83.6293	33.0189	116.6482	42.8859	119	11	11	23	3	71	5
합 계											149	14	14	29	4	88	6

주택형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총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1차(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0.10.30	2021.02.28	2021.06.30	2021.10.30	2022.02.28	2022.06.30		
59A	2층	1	227,000,000	36,414,000	190,586,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68,100,000
	3층~5층	5	231,000,000	36,414,000	194,586,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69,300,000
	6층~15층	12	234,000,000	36,414,000	197,586,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70,200,000
	16층 이상	12	237,000,000	36,414,000	200,586,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71,100,000
59B	2층	5	227,000,000	36,587,000	190,413,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68,100,000
	3층~5층	11	231,000,000	36,587,000	194,413,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69,300,000
	6층~15층	57	234,000,000	36,587,000	197,413,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70,200,000
	16층 이상	46	237,000,000	36,587,000	200,413,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71,100,000

-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평 = ㎡ x 0.3025 또는 ㎡ ÷ 3.3058)
- ※ 본 아파트는 분양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등록세 포함)가 미포함 되어 있음.
-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 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주민공동시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봄.
-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락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 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생활지원센터, 주민회의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시설별 대지비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상가의 각 실별 대지비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각 유형별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방법	특별공급 유형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 한국강정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한국강정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은행창구 접수 불가)	기관추천	①해당 관계기관에 주택형별 신청 ②해당 관계기관에서 우선순위 선정 ③사업주체 추천명단 통보 ④해당 관계기관에서 선정된 신청자 인터넷 청약접수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인터넷 청약접수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 이하 10%)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2	6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1
	장애인	1	4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3	11	14
신혼부부특별공급 (85㎡ 이하 20%)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8	23
		일반공급(25%)	5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3%)		1	3	4
합계		13	48	6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예)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예)아들·딸·사위·며느리·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자 (예)전혼자녀 등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울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분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14세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추천기관
------	--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존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울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 선정 시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예비자 포함)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함.
• 동일 세대에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특별공급 포함)에 대하여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공화국,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14세대)

구분	59A	59B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11	14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단, 청약신청자와 세대분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가 인정되는 경우는 청약신청자와 재혼배우자 사이에서 재혼 후 태어난 자녀(직계비속, 친자녀)인 경우만 해당함]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역(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함]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자수 (1)	40	5명 이상 4명 3명	40 35 30	•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자녀수(2)	15	3명 이상 2명 1명	15 10 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5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20 15 1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자축가입기 간(6)	5	10년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자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자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서 작성한 기재사항이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29세대)

구분		59A	59B	합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우선공급(75%)	5	18	23
	일반공급(25%)	1	5	6
합 계		6	23	29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2020.02.20.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 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 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 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 있는 경우	120%초과 ~ 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우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우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우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	--

선정 방법	<p>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한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p>* 임신부부 또는 임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임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임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p>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연말정산 등으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본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로기간을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사업자	일반·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금년도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사업자 확인 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상기 재증명 서류는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재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무주택구성원 중 세대주 및 미성년자(만19세 이상)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4호(2018.12.11.)]”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4세대)

구분	59A	59B	합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3%)	1	3	4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	---

	<p>아니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p>※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름</p>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3.) 현재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지속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울산광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지속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3.)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접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형별로 층,동,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중복 청약접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대하여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명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지속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함.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울산광역시)으로 전입 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청약잔액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울산광역시)으로 전입 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음.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함.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지속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신청구분	공급방법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지속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여야 하며,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거나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2순위	전주택형	추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정제의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2020.0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시에는 규칙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에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비속 및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체류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정제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정항목	가정상한	가정구분	점수	가정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출입국사실 증명원 ■ 가정일(2018.12.11) 이후 분양권·임주권을 계약한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은 가정 산정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권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p> <p>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p> <p>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우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p> <p>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p> <p>-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p> <p>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p>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p>•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p> <p>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p> <p>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p> <p>※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p> <p>•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p>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8조	<p>1.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점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p> <p>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 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p> <p>3.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 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p>

	<p>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p> <p>②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p>
--	--

4 청약신청 방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8.04(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사업주체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0.08.05(수)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2순위	2020.08.06(목) 08:00~17:30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접수 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대리인 접수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 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익일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해당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강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기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강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강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한함)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의 ①~③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분 ※경쟁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청약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인증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 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함.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시 자격인증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서(별도양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자격인증 서류 -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추첨제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 75% : 무주택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청약Home)의 경우 신청 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받으시기 바람,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 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

<p>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건본주택에 내방하시어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처리합니다. 단, 특별공급 예비수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대상 공급일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20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호(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을 확대 요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08.12.(수)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08.24.(월)~2020.08.26(수) (10:00~16:00)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97-2번지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화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화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autovalley-hyangleeps.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새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8.12 (수) ~ 2020.08.21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8.1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안내

구분	사전서류검수기간	계약기간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0.08.13(목)~2020.08.22(토) 10일간, 10:00~17:00	2020.08.24(월)~2020.08.26(수) 3일간, 10:00~16:00	오도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건본주택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97-2번지)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순위에 청약신청 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 비치
		○	주인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인강증명서, 인강도장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 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발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입주자모집공고 현재부터 과거 1년 기간 지정 발급(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발고자 하는 경우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간 기간 지정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기관 추천 (일반)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 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인정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 녀 특별 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기준표	-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 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하 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 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자녀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발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의 소득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 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본인 또는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출산이행 확인각서	배우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 24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자녀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정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청약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①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②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일반공급 당첨자(예비 입주자)

구분	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 공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바람
	○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요망.(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수로 산정한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기간 지정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뿔(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준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서약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의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정정수 및 청약 자격 확인서류 등)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계약 시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①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②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7 계약 체결

■ 계약체결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0.08.24.(월)~08.26(수) (3일간, 10:00~16:00)	오도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97-2번지)	052-294-1234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주택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주택 분양대금 납부계좌	경남은행	207-0097-5068-00	우리자산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 필히 기재 (예:101동 3001호, 1013001)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용으로 대체
	○		계약금	본인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자격검증서류	본인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또는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분양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홍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 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계약부활요청서(당사 비치)」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한 한,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부활요청 시 사전접수 기간 내 접수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계약부활요청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시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은 당첨자로 관리됨.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 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이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부담(납부)하며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용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함.(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중도금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함.
-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 개인 신용 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을 짐.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기간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및 보증한도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당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8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구분	금액	부가가치세	합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 시	2021.06.30	2022.02.28	입주 시	
59A	8,000,000	800,000	8,800,000	1,000,000	2,500,000	2,500,000	2,800,000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59B	9,000,000	900,000	9,900,000	1,000,000	3,000,000	3,000,000	2,900,000	

■ 주방 및 거실 폴리싱타일 시공비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금액		계약금 (20%)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30%)	잔금 (20%)	비고
			계약 시	2021.06.30.	2022.02.28.	입주 시	
59A	1,400,000		280,000	420,000	420,000	280,000	
59B	분리형	1,860,000	372,000	558,000	558,000	372,000	가변벽 설치
	통합형(M/H)	2,060,000	412,000	618,000	618,000	412,000	가변벽 미설치(침실3포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폴리싱타일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및 폴리싱타일 시공비 납부계좌	경남은행	207-0097-5082-00	우리자산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 필히 기재 (예:101동 3001호, 1013001)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및 폴리싱타일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람.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표)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3001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101호 홍길동 : 102101홍길동)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 및 폴리싱타일 시공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비확장형 선택시 외부 사시 미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포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당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 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및 색상 발코니 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돌출, 우물천정 디자인 변경, 커튼박스 깊이 축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또한 발코니 외부 축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실내에서 출입하는 발코니 도어 등은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음.
- 비확장 선택 시 주방측 발코니 천정에 주방 배기를 위한 덕트가 노출 시공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금액	계약금 (20%)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30%)	잔금 (20%)	비고
		계약 시	2021.06.30.	2022.02.28.	입주 시	
59A,B 동일 (LG 시스템 에어컨)	거실 + 침실1	3,600,000	360,000	1,080,000	1,080,000	1,080,000
	거실 + 침실1 + 침실2	5,100,000	510,000	1,530,000	1,530,000	1,530,000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200,000	620,000	1,860,000	1,860,000	1,860,000

-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설치비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금액	계약금 (20%)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30%)	잔금 (20%)	비고
		계약 시	2021.06.30.	2022.02.28.	입주 시	
59A,B 동일	1,100,000	220,000	330,000	330,000	220,000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

- 현관 중문 설치 유의사항

- ※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현관중문 선택여부에 따라 신발장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중문 옵션은 입주완료 후 해당업체에서 시공예정으로 모델하우스와 일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 본 아파트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상판 엔지니어스톤 시공비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금액	계약금 (20%)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30%)	잔금 (20%)	비고
		계약 시	2021.06.30.	2022.02.28.	입주 시	
59A	2,000,000	400,000	600,000	600,000	400,000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
59B	1,930,000	386,000	579,000	579,000	386,000	

■ 하이브리드 쿨탑 설치비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금액	계약금 (20%)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30%)	잔금 (20%)	비고
		계약 시	2021.06.30.	2022.02.28.	입주 시	
59A, 59B 동일 (ERA-BTH32)	550,000	110,000	165,000	165,000	110,000	

■ 빌트인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시공비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금액	계약금 (20%)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30%)	잔금 (20%)	비고
		계약 시	2021.06.30.	2022.02.28.	입주 시	
냉장 + 빌트인김치냉장고 + 냉장고오븐장 + FIX판	2,100,000	420,000	630,000	630,000	420,000	59A, 59B 동일하며, 빌트인 냉장고만 시공불가
냉장 + 빌트인김치냉장고 + 빌트인냉장고 + FIX판	7,400,000	1,480,000	2,220,000	2,220,000	1,480,000	

■ 시스템 에어컨, 현관중문, 주방상판, 하이브리드쿨탑, 빌트인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 공사비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 에어컨, 현관중문, 하이브리드 쿨탑, 주방상판 공사비,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계약일 및 계약장소, 입금 계좌는 추후 공지예정		

■ 추가 선택 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 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추가선택품목 계약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업체 및 공사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달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건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건설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됨.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해제는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마이너스 옵션(기본 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 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문	목창호 문틀, 문짝, 문선, 손잡이, 경첩 외 하드웨어 일체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대피공간 방화문
바닥	마루, 바닥타일(타일몰임몰탈 포함), 디딤판, 굽도리,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바닥도장	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포함), 아트월, 벽타일 도장	콘크리트 벽체 미장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초배포함), 단천장, 물딩, 도장 및 기타 천장재	콘크리트 벽체 미장 또는 천정을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욕실	벽, 바닥타일, 천장재, 세면대, 헛덕,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부부욕실), 욕조하부틀, 코킹, 콘센트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기구	주방기구 일체(상판 싱크볼 및 주방액세서리 일체),,가전류(자동식소화기 포함), 주방TV, 벽 마감 일체, 수전, 음식물탈수기, 다용도실(주방발코니), 가구 및 선반 일체	소방검사관련 시설, 주방배기덕트, 설비배관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일체, 콘센트, 스위치	전기 배관/배선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및 창고(도어 및 선반포함), 팬트리(도어 및 선반포함), 창고(도어 및 선반포함), 침실 불박이장(상판포함), 드레스룸가구(도어 및 선반 포함), 파우더장(상판 조명 포함) 외 가구 액세서리 일체	
창호	목창호(가를 제외), 실외기실 도어	목창호 가를, 내부 분할 플라스틱 창호
기타	수전류(세탁수전, 발코니 수전 외)	설비배관(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거실 웰패드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구분	59A	59B	비고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금액	17,500,000	17,50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아파트 기본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공된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관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가 불가함.(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음.

■ 다음 유의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일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 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 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외부공간의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포장패턴 및 마감 등은 실시공사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 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포함)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카탈로그 이미지컷, 견본주택 내 단지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도로 선행,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CG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측량결과 및 최종 인허가 결과, 실시설계, 본공사 내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및 구조는 본 공사 굴토 후 지내력 시험 결과 등에 따라 최종확정,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주택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 등에 대하여 행정관청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법적 기준에 따라 층수 산정 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총별 분양가를 산정함.
- 건축법적 기준에 따라 층수가 산정되었음.
-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전체 면적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함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확정측량 등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부 기부채납시설(도로 등)과 주변 도로계획 및 도로 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입주 후 불법구조물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시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동일지역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조경과 당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당 아파트의 구조 및 공법(단지 주변 옹벽 등)을 위해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일부 지하주차장 층고 변경 등의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경 및 지하주차장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 및 터파기공법 등 구조 및 토목 관련 설계내용은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의 건축계획 및 용도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인허가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인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에 의뢰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입주 후 교통량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59B 타입 유니트가 건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팸플릿 및 분양상담 등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건립타입 내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쇼파, 아트워크, 조경연출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품목과 추가선택품목(무상옵션)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등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가상공간이거나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견립타입은 동일 타입이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견립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마감재의 종류는 동등사양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E/V의 인승·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 및 난간대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환기구(급/배기용),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관계법령 및 설계도면 기준에 맞추어 설치됨.(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커튼박스의 규격은 타 공정 간섭을 고려하여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부타입만 개설하며, 이외 타입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밖의 타입은 유사타입을 참고하시거나, 단위호실 VR과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윌패드, 주방TV폰, 욕실스피커폰, 대기전력차단스위치, 디지털도어락, 현관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견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는 호실의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안내 문구 및 시트 부착물은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품목(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기준입니다. 공사 시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3m 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정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세탁실) 상부에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별도의 천장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의 사이즈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자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불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세대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천정에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루 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욕실, 발코니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 비확장 발코니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세대에서 발코니로 출입하는 실외기, 세탁실 도어 등은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위치, 형태,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필로티 상부층 및 인접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내 다용도실과 발코니의 수전 및 드레인 위치는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 일반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실 등 발코니의 경우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 마감이 없음.(도색마감)

-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실, 내외 온도차이 및 생활여건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 환기설비 가동은 동절기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창호의 턱높이, 색상, 사이즈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창호(그릴창 포함) 및 난간의 재질 및 사양,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는 대피공간이 설치됩니다.
- 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며(전용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전용 인터넷 회선 관련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에게 청구됨(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음성인식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연동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와 스마트 가전기기를 별도 구매하여야 사용이 가능함(단, 음성인식 스피커는 제품 사양 및 모델이 변경될 수 있음).
- 가전제어 서비스의 경우 연동 가능한 제조사 및 가전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디지털 도어락은 홈네트워크 시스템과의 연동, 무선 문열림 기능 제공.
- 웰패드, 주방TV, 욕실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상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함.
- 단위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 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음
- 지상 2-3층, 최상층 세대의 방범을 위하여 거실 및 각실 발코니 내부에 동체감지기를 설치하며, 기타 층에는 거실만 설치됨.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설비기구 및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차함은 안방, 주방, 복도, 침실(출입로 뒤편) 중에 한 곳에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는 다를 수 있음.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 등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됨.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은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 등으로 복구해야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정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59A타입의 침실2와 침실3의 경계벽 및 59B타입의 침실3과 거실, 침실1(안방)과 침실2의 경계벽은 가변형벽체 시공 시 비내력벽(경량구조의 경계벽)으로 시공 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물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시 분양광고, 모형, 공간감지 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차후 미확인으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 최종 인허가 결과, 실시설계, 본공사 내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광고, 계약내용, 사업부지 주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기부채납 시설 포함)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호실 평면도, 카탈로그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 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동출입구, 외부난간의 형태 및 높이, 단지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당 공동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도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설계변경 시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건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주동의 위치,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조경 및 지하주차장은 교통 체계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색채 및 입면디자인 및 마감 등은 관찰관청의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 최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발생한 인쇄물, 조감도 및 단지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의 외관 (BI 위치 및 디자인, 색채, 패턴, 문주, 주출입구, 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디자인 및 사양,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난간디테일), 경비실 (면적포함),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옹벽 중 일부 구간은 외부 노출도에 따라 마감 사양이 석재뿔칠로 조정 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하부층 호실은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과 자전거보관대 시설 이용 등으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사용 될 수 없으며,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함.
- 본 단지는 배치상 인접 동 및 호실에 의해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 및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랙프, 비상차로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호실에는 차량 소음, 전소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건축 입면의 미관을 고려하여 가스배관 입상과 계량기 위치, 보일러의 연도배기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 팬트리형 주방후드의 설치로 인해 주방 천정에 팬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팬가동 시에는 천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운전 소음이 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는 세탁실이나 펜트리 등의 실내의 높이는 필터 등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성 향상을 위해 조정될 수 있다.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영,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주변 도로보다 낮게 위치하여 채광 일조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인근주인공과 함께 이용가능한 3M도로 개설계획에 있으며, 인근차량 출입 및 보행자 검증도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계획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조합원 세대, 일반분양 세대 공동 사용)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분배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문고,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시공사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경로당, 보육시설, 옥상조경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은 지하에 위치하여(일부 제외) 채광, 습기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실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배치상 동, 향,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인접 동 및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탑라이트)이 노출되어 소음 및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입면 하단부 석재마감 및 석재마감 상단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상의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 비상차로 접근이 어려운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환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함.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일부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 창호는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폭과 높이, 창호 유리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옹벽 등으로 일조 및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동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이 인근에 설치되어 주동 출입구 이용 불편,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 인근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는 동은 소음 발생 및 조망권 저해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모델하우스) 모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부속동 옥상 상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은 동의 위치에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진입 하거나 지하주차장 램프를 통해 진입 하거나 출입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상가용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주차 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에 인접한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보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비상차로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인근 아파트 단지내 따라 일조·조망·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형태로 인한 요철, 입면 마감재 및 장식물, 외부승강기 및 계단실, 지하층 환기용 급배기구,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급배기구(실외기실 포함)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한 건축법 제 규정을 만족함에도, 저층 세대 및 일부 세대는 향, 배치에 따라 일조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리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 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주변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도로소음 및 야간에 가로등, 차량 등으로 인해 취침에 방해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자도로, 동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필로티는 공공통로로서 그 인접 상부 세대는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각 주동별로 형태가 상이하여 주동 E/V, 계단실 위치가 다를 수 있고, 주동 형태로 E/V출 창호의 크기, 위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음.
- 각동의 일부 세대는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이로 인한 소음, 냄새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음.
- 각 주동 진입구는 위치에 따라 전면부 또는 후면으로 진입이 될 수 있으며 주동 인근에 부대시설이 위치할 경우 주동 출입구가 부대시설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필로티 내부에 환기용(제연철편)D/A 및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창은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 일부 층에 환기창을 설치함.
- 기타 기능상 또는 인허가청 요청에 따라 추가 시설물(도시가스 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상향에 따라 일부세대에서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 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상업지역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주차장 399대(장애인 주차 14대 포함)로 계획됨
-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인접한 동 일부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의 내부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주방기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내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도시가스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4~22층 규모로 시공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등 지하PIT층은 내부마감이 없으며,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및 동력 출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출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어 빗물유입, 청소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 드라이에어리어 환기구, 지하주차장 환풍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명칭, 동번호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조경 및 세부식재 및 세부 조경시설물 시공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쓰레기분리수거대는 세대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할 것.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부대시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자를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에 들어가는 서적, 운동기구 등 집기 용품과 이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집기 제외)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바람.
- 주출입구(진출입 차로 구분됨) 차로폭(연석제외)은 6.4~6.6M이고, 지하주차장 차로폭은 6.0M~7M입니다. 주출입구의 차량 출입 높이는 2.3M로 제한되어 탑차 등의 출입이 불가하니, 이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 바람.
- 당 건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이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 설치되어 주차이용에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바라며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의 경비실은 위치가 이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일부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상가별 전기분전반이 설치되며, 전기사용량 확인은 상가 공용판넬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함.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있음. 특정시설 입점 시는 입점자가 별도의 소방시설을 추가하여야 하며, 인테리어공사 시 스프링클러 위치 등이 변경 될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입점 후 변경시도 동일)
- 상가별 전원공급, 소방 등 전기, 통신, 소방 시스템 설비가 건축 구조상 각 점포 상부 전선을 관통하여 설치되며 건물의 유지 보수 시 다른 매장 내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전기사용량 검침은 별도의 원격검침 시스템이 없으며, 공용판넬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상가별 인입간선은 10 ~ 16SQ 로 시공되며, 대용량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간선 교체 공사를 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함.
- 상가 앞쪽에 건물의 안전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전 또는 발신기 셋트가 설치되오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바랍니다.
- 조명기구는 LED 조명으로 시공되며, 등기구 교체 공사를 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함.
- 상가 내 통신 아웃렛으로 TV 1개소, 8PIN MODULAR JACK 2구용(전화+데이터) 2개소가 상가별로 제공됨.
- 전화, 인터넷 및 유선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시공되어 있으며, 사용을 위한 신청은 “을”이 직접 기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야함.

■ 조경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심의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선 등), 조경식재와 조경 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테마가든, 휴게공간 등)의 선형, 마감재,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식재 계획, 포장계획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유지관리 적절성, 자연재해, 수급문제 등에 따라 수종, 규격, 일부 수량과 위치, 재료, 형태, 색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인 공동의 시설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산책로,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대 등 생활편의 시설물의 위치에 따라 일부 호실은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소방 안전매트 설치 및 소방차 전용공간을 고려한 소방심에 따라, 주거동 하부 녹지대의 식재계획이 배제되어 저층부 호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경관적 호불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민원요소가 되지 아니함.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 각종 필로티 혹은 단지 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여건에 따라 보관대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된 어린이 놀이터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호실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된 수경시설 및 기타 조경시설에 의해 인근 해당 동 및 호실에 소음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및 주민공동시설에 옥상녹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으며 최상층 세대 또는 입주자 개인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단지 외부여건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형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냉세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주변단지의 신축, 개축 등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10~20m 도로가 인접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주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도로 여건에 따라 저층세대가 도로 레벨보다 낮게 위치할 수 있어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함.
- 향후 주변시설과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도로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비산먼지, 형오시설 존재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건본주택,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전시품 등이 같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바람
- 건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및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본주택 내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감도 상 조건식재, 주변환경, 단지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온돌마루,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수량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건본주택,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세대내 욕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의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욕실 거울수납장 후면 마감재(타일) 없음
- 세대내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체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세대 내 현관,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의 자연환기량 감소,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출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타입별로 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마련되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에서 배출되는 열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 매립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역자형을 기준으로 설치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 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입주후 실외기 설치시 실외실에 설치한 실외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루버 하부턱의 높이를 고려한 실외기 받침대 등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 루버의 색상, 규격 개폐 손잡이 설치방향 및 개수 등은 입주자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전장부위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됨
-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 상·하부 및 불박이장 뒷벽 등에는 마감재(마루, 도배, 타일 등)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 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 바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으며,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 함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됨
- 일부 주택형의 경우 하부장 조리대 설치 뒷면에는 조리용 기구(냄비 등)의 사용시의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뒷선반을 설치하지 않음
- 신발장 하부마감이 비대칭으로 형성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지붕)에 공평용 TV안테나가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해당동은 지붕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세대 내 설치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음
- 소방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고사인, 외벽마감,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함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 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천재지변, 공사여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아파트 준공 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아파트 부지내 방음시설이 설치 될 수 있음.
- 학교의 경우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중산,매곡학교군 및 신천학교군이며, 초등학생의 경우 현재 중산초이나 향후 학교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예정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 및 일자는 입주예정자에게 서면 제공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2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예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사회적 이슈,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함.
-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용시설 : 주차장(아파트 390대(장애인 주차 포함), 근린생활시설 9대, 총 399대), 관리사무실, 경로당, 입주자회의소 등,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조정시설 등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분	적용여부	비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설계조건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 채택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조명설치(다목)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계약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변경 될 수 있음)

구분	감리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감리금액(원)	비고
건축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8-81-0296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길 12	789,776,900	부가세 포함
전기	(주)천도건축사사무소	220-87-14356	서울 강남구 도곡로 190(도곡동, 서원빌딩 4층)	349,887,250	
소방	(주)한진엔지니어링	610-86-18107	울산 남구 봉월로 60번길 33	220,000,000	
통신	(주)그린이엔씨	610-86-12516	울산 중구 태화로 216	110,000,000	

■ 감정평가기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

기관명	인증서 번호	감정평가액(단위:원)	비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20181113-00-066	21,746,016,000-	심사인증서 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서 기간
제 01222020-101-0002300호	24,465,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 의무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공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흡오도,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시행사, 시공사 정보

구분	시행사	시공사	비고
상호	중산동지역주택조합	(주)한양건설	
사업자등록번호	137-82-82009	408-81-09859	
주소	울산시 북구 호계로 297-1, 2층(호계동)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감북동)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건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고
052-294-123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97-2번지	http://autovalley-hanyangleeps.com	

※ 본 건본주택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건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건본주택 위치도

